

2008.3.5.11:00
충주시의회본회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

-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참 지방자치 구현과 자치입법기능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상 정립
-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내실 있게 정비하여 미래 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도모

□ 운영개요

- 위원회구성
 - 일 시 : 2007. 3. 6(제113회 임시회)
 - 명 칭 : 충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 구 성 : 충주시의회의원7명
 - 박인규의원(위원장), 강명권의원(간사), 김경숙의원, 심재연의원, 양승모의원, 윤범로의원, 지덕기의원
- 운영기간 : 2007. 3. 6 - 2008. 3
- 정비대상 : 229건(조례225, 규칙4)
- 정비건수 : 54건(조례 52 규칙 2)
 - 1차정비(117회 임시회) : 10건
 - 2차정비(118회 임시회) : 3건
 - 3차정비(124회 임시회) : 41건(조례39, 규칙2)
 - 개정 33, 조례폐지 2, 개정권고 3, 자구수정3
 - 주1회 특위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조례검토
 - 중점검토사항
 -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저해되는지 및 법령근거 여부
 - 시민에게 과중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지 여부
 - 기타 현실 부합 여부 및 표현의 적절성, 해석상의 문제 등

□ 운영경과

차 수	일 시	장 소	내 용	비 고
제113회 임시회	2007. 3. 6	본회의장 산건위원회 회 의 장	조례특위구성	
제1차 위원회	2007. 3. 6		위원장 간사 선임	
제2차 위원회	2007. 3.29		조례정비 검토	
제3차 위원회	2007. 4. 4		조례정비 검토	
제4차 위원회	2007. 4.11		조례정비 검토	
제5차 위원회	2007. 5. 2		조례정비 검토	
제6차 위원회	2007. 7. 4		조례정비 초안 작성 및 검토	
제7차 위원회	2007. 7.10		조례정비 상황 보고서 채택	
제117회 임시회	2007. 7.20	본회의장	특위활동기간 연장 조례정비의 건 처리(10건)	
제8차 위원회	2007. 7.23	산건위원회 회 의 장	조례정비 검토	
제9차 위원회	2007. 8. 6		조례정비 검토	
제10차 위원회	2007. 8.13		조례정비 검토	
제11차 위원회	2007. 8.22		조례정비 실무의견 청취	
제12차 위원회	2007. 8.29		조례정비(개정안) 의결	
제118회 임시회	2007. 9.21	본회의장	조례정비 건 의결(3건)	
제13차 위원회	2007.10.29	산건위원회 회 의 장	조례정비 검토	
제14차 위원회	2007.11. 5		조례정비 검토	
제15차 위원회	2007.11.19		조례정비 검토	
제16차 위원회	2007.11.26		조례정비 검토	
제17차 위원회	2008. 1. 7		조례정비 검토	
제18차 위원회	2008. 1.16		조례정비 검토	
제19차 위원회	2008. 2.11		실무의견청취	
제20차 위원회	2008. 2.18		조례정비 초안 작성	
제21차 위원회	2008. 2.25		조례정비 결과 보고서 채택	

□ 조례정비결과

가. 조례정비유형

실과소별	조례 건수	정비 건수	정비유형					
			시민편 익도모	업무효율 성도모	현실 부적합	법개 별정	불필요한 자구수정	관직명 칭변경
계	225(4)	52(2)	4	5(2)	11	26	3	3
의회사무국	13(4)	12(2)		2(2)	1	8	1	
공보담당관실	3							
총무과	19	7		2	2	1	1	1
기획감사과	20	6			1	4		1
자치정보과	5	1			1			
종합민원실	6							
세정과	6	2		1		1		
회계과	5	1				1		
경제과	13	3	1		1		1	
지역개발과	8	1				1		
도로과	7	1				1		
교통과	6	4			1	3		
건축과	5	1	1					
재난관리과	10							
주민생활지원과	11	3			3			
사회복지과	16	5				5		
문화체육과	10	3	2			1		
관광과	3							
환경과	11							
농정과	8							
산림녹지과	5							
친환경농산	1							
보건소	8							
농업기술센타	3	1						1
물관리사업소	11							
여성회관	1							
시립도서관	1							
공공시설관리소	1							
체육시설관리소	1							
박물관	1	1			1			
읍면동	7							

* ()내서는 규칙

나. 조례정비결과

○ 1차정비(117회 임시회) : 10건(조례개정)

1.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4.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7.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충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차정비(118회 임시회) : 3건(조례개정)

1. 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3차정비(124회 임시회) : 41건(조례39, 규칙2)

1. 개정 : 33(규칙2)건(따로 붙임)
2. 조례폐지 : 2건 (따로 붙임)
3. 개정권고 : 3건
 - 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특별회계존치여부 검토 및 인용법령 정비 등 권고
 -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
 : 조례를 시행 가능하도록 자체개정안 마련 시행권고
 - 충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 토지소유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설치 권고

4. 자체 자구수정 통보 : 3건

- 충주시의회 공인조례(구분하다→구분한다)
- 충주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 충주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시별로→일시불로)

* 따로 붙임

-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정수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충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충주시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충주민원실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충주시의회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0
------	-----

발의연월일 : 2008. 3.
제 출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참 지방자치 구현과 자치입법기능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상 정립하고
-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내실 있게 정비하여 미래 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도모코자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건수 : 225건
나. 정비건수 : 31건
- 시민편의도모 : 1건
 - 업무효율성도모 : 2건
 - 현실부적합 : 6건
 - 법령개정 : 22건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충주시의회규칙 제19조
나.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붙 임

-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원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부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2조(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한다.

제3조(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를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86조”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8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80조”를 “「지방자치법」 제88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충주시의회회의규칙”를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4조(충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로 한다.

제5조(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5조”로 한다.

제6조(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하며, 동항 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며, 동항 제4호 중 “법 제95조”를 “법 제104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를 “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충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조례”를 “충주시의회에서의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5”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제4조 중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지급에관한조례”를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한다.

제8조(충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법률고문 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를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의 개정)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를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로 한다.

제10조(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8조”로 한다.

제11조(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를 “『지방자치 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8조”를 “법 제44조”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법 시행령 제19조의4”를 “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법 제118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9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12조(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니 하는 때”를 “아니 하는 업무를 겸직할 때 ”로 한다.

제13조(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개정)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를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제14조(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며, 동조 제2호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15조(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살미복지회관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308-5
---	--------	------------------

제16조(충주시수입증지조례의 개정) 충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모양은 새마을운동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을 “모양은 새마을운동·자연보호운동 또는 충주시를 상징하는 도안 등”으로 한다.

제17조(충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의 개정) 충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를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노점 단시간(오전,오후) 1제곱미터마다 소채류 및 기타는 1회 1대 또는 반입단위마다”를 “노점 점유면적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충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의 개정) 충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시장의” 앞에 “시의회에 보고하고”를 삽입한다.

제1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충주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하며, “동법 제10조제2항”을 “동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2 감면대상 제7호 중 “농지개량조합”을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0조(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의 개정) 충주시도로복구원인 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4조 및 같은 법 제67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64조”로 한다.

제21조(충주시주차장조례의 개정)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제22조(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를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영 제17조제18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8호”로 한다.

제23조(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충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31조의2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11조의2제3항”을 “영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61조”로 하며,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을 각각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5조(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개정)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6조(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로 하며,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27조(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6조”를 “「장애인복지법」 제9조”로 하며, “동법 제53조”를 “동법 제63조”로 한다.

제28조(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충주시 교현동 688-1번지”를 “충주시 교현2동 714번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수용자”를 각각 “입소자”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로 한다.

제21조 중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로 하며,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의 제목 중 “노인복지회관” 을 각각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29조(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를 “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30조(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별지1호서식 및 별표 중 “모·부자가정”을 각각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1조(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체육진흥 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지흥법 제5조제3항”을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u>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명 :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p> <p>제1조(목적) - - - 「<u>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u>」 - - - - -</p> <p>- - - - -</p>

2.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54조</u>」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지방자치법 제62조</u>」 - - - - -</p> <p>- - - - -</p>

3.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 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78조</u>에 의한 징계의결을 위한 사전심사와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명 :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 - 「<u>지방자치법 제86조</u>」 - - - - -</p> <p>- - - - -</p>
<p>제10조(징계의 사유) <u>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윤리규범</u> 등을 위반한 때에는 의결로서 이를 징계할 수 있다.</p>	<p>제10조(징계의 사유) 「<u>지방자치법 제86조</u>」 - - - - -</p> <p>- - - - -</p> <p>- - - - -</p>
<p>제11조(징계의 종류 및 의결) ①징계의 종류는 <u>지방자치법 제80조</u>의 규정에 준한다.</p>	<p>제11조(징계의 종류 및 의결) ①징계의 종류는 <u>지방자치법 제88조</u> - - - - -</p>
<p>제1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등) ①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리절차는 <u>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u>를 준용 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등) ① - - - - 「<u>충주시의회회의규칙</u>」 - - - - -</p> <p>② (생략)</p>

4.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충주시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명 : 충주시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 - - - - - - - - - - - -

5.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 - - - - - - - - - - - - - - - - -

6.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명 :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중략~	제1조(목적) - -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 - - - - - - - - - - - - ~중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104조 내지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 ~중략~ 5. (생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3조 내지 제117조 및 제120조 - - - - - - - - 3. - - - - - 법 제146조 - - - - - - - - 4. 법 제104조 - - - - - - - - - - ~중략~ 5. (현행과 같음)

7. 충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명 : <u>충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u>	제명 : <u>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5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 <u>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u> -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u>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u> [별표1]의 의원여비지급기준을 준용 한다.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 - - - - <u>「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u> - - - - -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u>숙박료</u>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 - - - - <u>숙박비</u> - - - - - .

8. 충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명 : <u>충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u>	제명 : <u>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u>

9. 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명 : <u>충주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u> 제4조(보조금의 지원) <u>충주시는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u>	제명 : <u>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u> 제4조(보조금의 지원) <삭 제>

10.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u>의3</u> 규정에 의한 충주시 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지방자치법」 제38조 - .

11.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의한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제3조(정례회의회기운영) ①법 제38조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이내로 한다. ②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중략~ 1.~2. (생략)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 . 제3조(정례회의회기운영) ①법 제44조 - - - - - - - - - - - - - - - . ②법 시행령 제54조 - - - - - - - - - - . ~중략~ 1.~2. (현행과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제1차 정례회에서 는 <u>법 제36조제1항</u>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u>법 제125조</u>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p> <p>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118조</u>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p>	<p>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 - - - <u>법 제41조</u> - - - - - <u>법 제134조</u> - - - - - - - - - - ② - - - - - <u>법 제127조</u> - - - - - - - - - -</p>
<p>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의회는 <u>법 제39조</u>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 - - - <u>법 제45조</u> - - - - - - - - - - ② (현행과같음)</p>

1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u>아니 하는</u>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7조(겸직허가) ①- - - - - - - - - - <u>아니 하는</u> 업무를 겸직할 때 - - - - - - - - - - ② (현행과같음)</p>

13.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p> <p>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u>다문화 주간</u>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1.~4. (생략)</p> <p>③ (생략)</p>	<p>제14조(세계인의 날) ①- - - - - - - - - -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p> <p>②- - - - - <u>세계인 주간</u> - - - - - - - - - - 1.~4. (현행과같음) ③ (현행과같음)</p>

14.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제외대상)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 <u>지방재정법 제14조</u>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u>지방재정법시행령제24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3.~4. (생략) 	<p>제2조(지원제외대상) - - - - -</p> <p>1. - - - 「<u>지방재정법</u>」 제17조 - - - - -</p> <p>2. - - - - - 「<u>지방재정법</u> 시행령」 제29조 - - - - -</p> <p>3.~4. (현행과같음)</p>

15.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명 : <u>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u>				제명 : <u>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u>			
[별표] 충주시읍·면복지회관명칭및위치				[별표] 충주시읍·면복지회관명칭및위치			
번호	회관명	위치	비고	번호	회관명	위치	비고
1	이류복지회관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35-1		1	- - - - -	- - - - -	
2	노은복지회관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554-6		2	- - - - -	- - - - -	
3	가금복지회관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256-10		3	- - - - -	- - - - -	
4	(신설)			4	살미복지회관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308-5	

16. 충주시수입증지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생략)</p> <p>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p>	<p>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새마을운동·자연보호운동 또는 충주시를 상징하는 도안 등 - - - - -</p>

17. 충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충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u></p> <p>제11조(사용료 징수) ①~② (생략) ③시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3. (생략) 4.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 일시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중 종일 사용자에 대하여는 <u>노점 단시간(오전, 오후)</u> 1제곱미터마다 소채류 및 기타는 1회 1대 또는 1반입 단위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p>	<p>제명 : <u>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u></p> <p>제11조(사용료 징수) ①~② (현행과같음) ③ - - - - - 1.~3. (현행과같음) 4. - - - - - - - - - - - - 노점 점유면적에 따라 - - - - - - - - - -</p>

18. 충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충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u></p> <p>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u>시장의</u> 승인을 얻어 행한다.</p> <p>1. (생략)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생략)</p>	<p>제명 : <u>충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u></p> <p>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 - - - - - - - - - - - - -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장의 - - - - 1. (현행과같음) 2. <삭제> 3. (현행과같음)</p>

19.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u></p> <p>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생략) ②토지가격은 <u>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u>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u>동법</u>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중략~ ③~⑤ (생략)</p>	<p>제명 : <u>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u></p> <p>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같음) ② -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 - - - - - - - - - 동법 제9조제2항 - - - - - - - - - - - - - - - - - . ~중략~ ③~⑤ (현행과같음)</p>

20.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21. 충주시주차장조례

22.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명 : <u>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u>	제명 : <u>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시교통정비촉진법</u>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도시교통정비 촉진법</u> 」 - - - - - - - - - - .
제3조의2(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8호 -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23. 충주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명 : <u>충주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u>	제명 : <u>충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u>도로교통법</u>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u>도로교통법</u> 」 - - - - -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 등) ①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은 시장이 직접 행하거나 또는 <u>법 제31조의2제1항</u> 의 규정에 의한 법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 등) ① - - - - - 법 제31조의2제1항 - - - - - ②(현행과같음)
제3조(견인비용 등의 산정) ① <u>영 제11조의2제3항</u> 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생략)	제3조(견인비용 등의 산정) ① <u>영 제15조제3항</u> ②(현행과같음)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②(현행과같음)

24. 충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명 : <u>충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u>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정학·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시, 군으로 전출 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②장학금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명 : <u>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u> 제8조(지급정지) <삭제>

25.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마일리지제 운영) ①~② (생략)</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주차료 등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충렬사(본인 또는 가족단위)</u></p> <p>2.~5. (생략)</p> <p>④ (생략)</p>	<p>제20조(마일리지제 운영) ①~② (현행과같음)</p> <p>③ - - - - -</p> <p>1. <u><삭제></u></p> <p>2.~5. (현행과같음)</p> <p>④ (현행과같음)</p>

26.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명 : <u>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u>	제명 : <u>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의지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제14조(위탁운영) ①~③ (생략)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u>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u> 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③ (현행과같음) ④ - - - - -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 - - - -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u>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u> 및 <u>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u> 를 준용한다.	제18조(준용) - - - - - - - -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 - - - - - -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 - - -

27.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8.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명 : <u>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u>	제명 : <u>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상담 및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u>노인복지법</u>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u>노인복지법</u> 」 - - - - -
제2조(위치) 복지관은 <u>충주시 교현동 688-1번지</u> 에 둔다.	제2조(위치) - - - - - <u>충주시 교현2동 714번지</u> - - - - - -
제7조(이용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노인복지시설 <u>수용자</u>	제7조(이용료) ① (현행과같음) ② - - - - - - - - - - 1. (현행과같음) 2. 노인복지시설 <u>입소자</u>
제13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략)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u>수용자</u>	제13조(사용료 면제) - - - - - - - - - - 1.~2. (현행과같음) 3. - - - - - <u>입소자</u>
제17조(위탁운영) ①~③위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u>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u> 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 ①~③위 (현행과같음) ④ - - - - - - - - - - 「 <u>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u> 」 - - - - -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u>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u> 및 <u>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u> 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 - - - - - - - - - - 「 <u>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u> 」 - - - - - - - - - - 「 <u>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u> 」 - - - - -

29.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u>장애인복지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 - - - - - - - - - - - - - -

30.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u>모·부자가정</u>,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우선계약 신청자격) ①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생략) 3. 「모·부자복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모·부자가정</u> 4. (생략) ② (생략) 	<p>제1조(목적) - - - - - - - - - - - - - - - <u>한부모가족</u> - - - - - - - - - - - - - - -</p> <p>제4조(우선계약 신청자격) ①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 - - - - - - - 2. (현행과같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 - - - - - - - <u>한부모가족</u> 4. (현행과같음) ② (현행과같음)</p>

31.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체육진흥법</u>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명 : <u>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 - - - - 「<u>국민체육진흥법</u>」 제5조</p>

충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911
------	-----

발의연월일 : 2008. 3.
제 출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폐지이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이 개정되어 존치가 불필요한 조례를 정리코드함

2. 주요내용

- 충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충주시의회규칙 제19조
- 나.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붙임 : 충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 례 폐지조례안 1 부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충주민원실사업지원 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912
------	-----

발의연월일 : 2008. 3.

제 출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폐지이유

○ 국민의료보험공단의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정리삭제함

2. 주요내용

○ 충주시충주시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충주민원실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충주시의회규칙 제19조
- 나.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붙임 : 충주시충주시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충주민원실사업지원 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 부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충주민원실사업지원육 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충주민원실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의회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913
------	-----

발의연월일 : 2008. 3.

제 출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참 지방자치 구현과 자치입법기능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상 정립하고
-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규칙을 내실 있게 정비하여 미래 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도모코자함

2. 주요골자

- 가. 규칙제명을 현실에 맞게 띄어쓰기함
- 나. 지방자치법의 변경 조항을 정리함
- 다. 현실에 부적합한 문구를 정비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충주시의회규칙 제19조
- 나.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붙 임 : 충주시의회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1 부

충주시의회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제1조(충주시의회회의규칙의 개정)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충주시의회회의규칙”을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위원회에 ”를 “위원회에서 ”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위원”을 “의원”로 한다.

제40조 중 “의장속”을 “의장석”로 한다.

제76조 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한다.

제86조 중 “소관 ”을 “소란”으로 한다.

제88조 제1항 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한다.

제88조 제3항 중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한다.

제2조(충주시의회진정서처리규칙의 개정) 충주시의회진정서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의회진정서처리규칙”을 “충주시의회 진정서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9조 중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을 각각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1.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명 : <u>충주시의회 회의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법 제63조</u> 등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u>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55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u>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u>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2조(발언의 허가) ① <u>위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u> ②~③ (생략) 제40조(의장의 토론 참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u>의장석</u> 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u>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u> ② (생략)	제명 : <u>충주시의회 회의규칙</u> 제1조(목적) - - - 「 <u>지방자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 - - - - - - - - - - - - -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같음) ② - - - - - - 법 제63조제1항 - - - - - - - - - - - - ③ (현행과같음)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u>위원회 제출한</u> - - - - - - - - - - - - - - - 제32조(발언의 허가) ① <u>의원</u> - - - - - - - - - ②~③ (현행과같음) 제40조(의장의 토론 참가) ① (현행과같음) ② - - - <u>의장석</u> - - - - - -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 - <u>법 제79조</u> - - - - - - - - - - - - - - - ② (현행과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86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 7. (생략)</p> <p>8. 기타 <u>소관</u>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p>	<p>제86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 - - -</p> <p>1. ~ 7. (현행과같음)</p> <p>8. - - - <u>소란</u> - - - - -</p>
<p>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u>법 제78조</u>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의원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② (생략)</p> <p>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법 제75조</u>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p> <p>④~⑤ (생략)</p>	<p>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 <u>법 제86조</u> - - - - -</p> <p>② (현행과같음)</p> <p>③- - - - -</p> <p>- - - - - <u>법 제83조</u> - - - - -</p> <p>④~⑤ (현행과같음)</p>

2. 충주시의회진정서처리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충주시의회진정서처리규칙</u></p> <p>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u>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u>와 <u>충주시의회회의규칙</u>을 준용한다.</p>	<p>제명 : <u>충주시의회 진정서 처리 규칙</u></p> <p>제9조(준용규정) - - - - - 「<u>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u>」 - - 「<u>충주시의회 회의규칙</u>」 - - - - -</p>